

보내는 사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환경과)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0 4 5 5 8

부정부패 ZERO! 청렴도 TOP 실현!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 청소기한: 2018-03-10
- 이전청소일: 2017-03-10
- 예상요금: 2,905,080 원
- 정화조용량: 168.00<sup>m</sup>

【요금 부과 기준】

기본: 0.75㎡까지 22,310원  
초과: 0.1㎡ 초과마다 1,610원 가산  
할증: 야간 7%, 지하(지하3층 이하) 5%

받는 사람  
중구 퇴계로26길 52-0  
(예장동 6번지 7호)

서울소방재난본부,

0 4 6 2 8

귀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내부청소안내】**

1.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1년에 1번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2.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기한내 정화조를 청소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3. 정화조 청소는 청소대행업체에 신청하십시오.
4. 정화조 청소영수증은 3년 이상 보관하십시오.

**정화조 내부청소 신청**  
☎(02)738-7677~8(유진건업)

5. 정화조 뚜껑을 밀폐시키고 잠금장치나 뚜껑 아래에 격자형 철망을 설치해야 하며,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 있는 정화조 뚜껑은 눈에 띄게 색칠하고 접근주의 안내문을 새겨야 합니다.
6. 정화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환경과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3396-561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